



교육부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20. 1.

교 육 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2019년 사업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2
III. 2020년 추진 방향	5
IV. 세부 지원계획	9
1. 국가장학금 I 유형	9
2. 다자녀 국가장학금	13
3. 국가장학금 II 유형	14
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22
5.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23
6.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25
V. 사업 추진 체계	27
VI. 사업 관리	29
VII. 추진일정	31
[붙임] 20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32

I

추진배경

1 기본 방향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2 추진 경과

- '11.9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12년부터 시행 후 지속 확대
 - 정부재정과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연계를 통한 등록금 공동부담 추진
 - ※ ('12년) 1.75조원, ('13년) 2.7조원, ('14년) 3.45조원, ('15년) 3.6조원, ('16년) 3.65조원, ('17년) 3.63조원, ('18년) 3.68조원, ('19년) 3.61조원
- '17.7월,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49-4) 국정과제로 선정
 - (49-4-1)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19.12월, '20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 5,503억원 예산 확정
 - ※ I 유형 2조 3,251억원, 다자녀 7,423억원, II 유형 4,800억원, 운영비 29.4억원

3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II

2019년 국가장학금 사업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1 2019년 사업성과

□ 정부·대학의 장학금 책임 분담

- 정부와 대학(등록금 동결 및 교내·외 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6.5조원 지원*, 109만명이 국가장학금 수혜

* 정부재원 장학금 약 4조원 + 대학 교내·외 장학금 약 2.5조원

〈 2019년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학 및 지원금액 현황 〉

구분	지원대학(개교)					지원금액(억원)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일반대	전문대	일반대	전문대		일반대	전문대	일반대	전문대	
1유형	47	9	187	161	404	3,234	55	12,614	6,786	22,689
다자녀	47	9	187	161	404	1,153	22	4,169	2,408	7,752
2유형	46	8	158	115	327	498	9	2,048	634	3,189
지역인재	34	2	71	70	177	102	0.3	358	187	647

※ 작성기준일 : 2019.12. 30. 현재

□ 학생·학부모가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

-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7년 90%이하→'18년 120%이하→'19년 130%이하)하여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

※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 : ('17) 53.5만명(재학생의 26.5%) → ('18) 66.5만명(재학생의 30.5%) → ('19) 68.4만명(재학생의 31.5%)

- 특히, 소득 3구간 이하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약 95%의 등록금 부담 경감 달성(8구간 이하 평균 약 80%)

〈 2019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



□ 다자녀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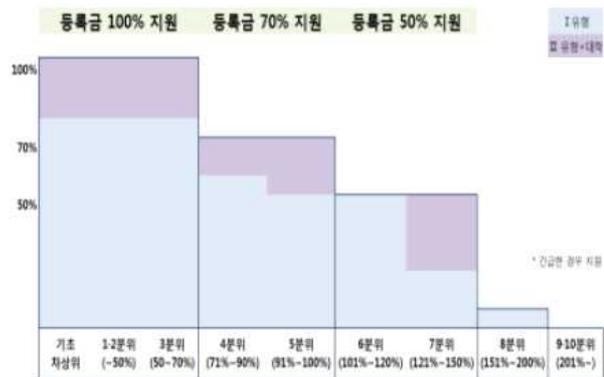
- 다자녀 장학금 연령제한('88년 이후 출생) 폐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도모
- 재학생 2차 신청 구제기회 확대(1회→2회)하여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는 불이익 최소화
- 지역인재장학금 C학점 경고제* 도입으로 장학생 영구 탈락 예방
 - * (기존) B학점 미만 시 장학생 영구 탈락 → (개선) 전 학기 장학생(5구간 이하)이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후 계속 지원

□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및 대학의 정책 적극 참여 유도

- 국가장학금 I+II 유형 연계 기준 제시로, 대학 특성에 관계없이 소득 구간별 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도모

〈 국가장학금 I·II유형+대학 교내·외 장학금 연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배율(소득구간)	I·II유형 및 교내외장학금 지원
70% ↓ (3구간 ↓)	등록금 100% 지원
100% ↓ (5구간 ↓)	등록금 70% 지원
150% ↓ (7구간 ↓)	등록금 50% 지원
200% ↓ (8구간 ↓)	대학 재정에 맞게 지원
200% ↑ (9구간 ↑)	지원 제외 ※ 긴급 경제사정곤란자 예외



- 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실시로 대학 및 전문대의 입학금 감축 유도 및 입학금 부담 완화

※ 학생에게 요구하는 요건이 없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대학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장학재단법」 개정, '18.12)

2 개선 필요 사항

-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 대한 오해와 불편 해소 필요
 - 산정 방식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통계청 '소득 분위'와 혼동하여 전체 학생의 하위 80%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것으로 오해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 등 고정 지출이 증가하여 학비 부담 능력은 줄어드나, 현재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미반영
- 교내장학금 지급의 대학 간 형평성 제고 필요
 - 대학은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조건 중 '1인당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개선 요구
 - 교내장학금 지급률의 과도한 차이* 등 그간 정부 정책에 협조한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줄일 수 없는 구조로 대학 간 형평성 저해
 - * 상·하위 10개교 간 평균 49.0%p 차이 발생(상위 평균 58.9%, 하위 평균 9.9%)
- 장학금 지급 투명성·공정성 미흡
 - 예산 집행에 있어 상시 모니터링 부재로 연말에 집행액이 커지는 등의 형식으로 예산 집행 운영, 대학·외부기관 등에서 개선 요구
 - 부정수급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제재·환수 방안 필요
 - ※ 권익위 “부정수급” 처리 송부 현황 : ('17년) 1건, ('18년) 3건, ('19년) 3건
- 국가장학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별도 계획 수립·추진)
 -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는 훈령 수준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 「교육기본법」 제28조는 장학금의 지급방법, 수혜자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장학금 운영규정(훈령)」에 규정 중
 - 「장학금 규정」, 「사도장학금 규정」 등의 대통령령이 존재하나, 이는 1990년대 이후 사문화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

Ⅲ 2020년도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① 소득구간 명칭변경 및 홍보·교육 강화

- 통계청 ‘소득 분위’와의 혼동 등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의 명칭을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변경
 - ※ 구간 산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름
- ‘지원 구간’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홍보 자료 배포, 국가장학금 신청 전 교육 동영상(3~4분) 의무 시청 도입
 - ※ ‘20.1학기 신청부터 홍보자료 배포, ‘20.2학기 신청부터 교육동영상 시청 의무화

②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 조정

- ‘20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이 4,749,174원으로 ‘19년 4,613,536원 대비 135,638원(2.94%) 인상되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조정

〈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조정 〉

(단위 : 원)

구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경계값			연간 지원단가
		19년(a)	20년(b)	증감(b-a)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	-	-	5,200,000
1구간	0~30%	1,384,061	1,424,752	40,691	5,200,000
2구간	31~50%	2,306,768	2,374,587	67,819	5,200,000
3구간	51~70%이하	3,229,475	3,324,422	94,947	5,200,000
4구간	71~90%이하	4,152,182	4,274,257	122,075	3,900,000
5구간	91~100%이하	4,613,536	4,749,174	135,638	3,680,000
6구간	101~130%이하	5,997,597	6,173,926	176,329	3,680,000
7구간	131~150%이하	6,920,304	7,123,761	203,457	1,200,000
8구간	151~200%이하	9,227,072	9,498,348	271,276	675,000
9구간	201~300%이하	13,840,608	14,247,522	406,914	-
10구간	301% 이상	" 초과	" 초과	-	-

③ 국가장학금 수혜 한도 관리 방식의 형평성 제고

- 장학금 수혜 한도를 '현재 재학 학교의 정규 학제'에서 '개인별 총 한도 8회' 부여로 개선(단, 재학 학교 내에서는 정규 학제 내에서만 지원)
※ (현행) 수혜 한도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정규 학제로,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 이동시 경우에 따라 지원 제한(4년제 → 2년제 이동 시 등)

④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조건 개선

- 입학금 폐지분 만큼 교내장학금을 조정('22년까지)하고도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최근 3년간('16~'18년) 평균 지급률* 이상인 경우,
* 등록금 수입 총액 대비 교내장학금 지급률 : 대학 19.143%, 전문대 15.731%
※ 평균 지급률 이하인 대학은 '1인당 교내장학금 유지 또는 확충' 기준 유지
- 평균 지급률과의 차액만큼 교내장학금의 5년간('20~'24년) 분할 조정을 인정하여 교내장학금 지급의 대학 간 형평성 제고
※ 단, II유형 예산 교부 시 평균 지급률보다 높거나 상향하는 경우, 평균 지급률과의 차액에 가중치(최대 10%)를 부여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⑤ 지역인재장학금 참여 대학 확대

- 비수도권 대학 간 형평성과 우수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 소재 캠퍼스의 지역인재장학금 참여 허용
※ (현행) 비수도권 소재의 분교만 지원 → (개선) 비수도권 소재의 분교 및 캠퍼스 지원

⑥ 사이버대학의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사업 참여

- 사이버대학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상대학에 포함
※ '19년 기준 입학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⑦ 재난장학금 지원기준 마련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주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 하에 학비 지원
※ 재난피해자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긴급 경제곤란자의 등록금 부담 경감

2

주요 내용

- ❖ (I 유형)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조정 및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관리 방식 개선
- ❖ (II 유형) 교내장학금 참여조건 개선,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사이버대) 및 지역인재장학금(지역 소재 캠퍼스) 지원 대상 확대
- ❖ (기타) 재난장학금 지원 기준 마련

□ (재원규모) '20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3조 5,503억원

※ I 유형 2조 3,251억원, 다자녀 7,423억원, II 유형 4,800억원, 운영비 29.4억원

-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및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간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상호 활용 가능

※ I 유형 국가장학금 집행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계획('20.10월 예정)

□ (지급구조) 등록금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 연계

-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 및 등록금 수준의 적정 관리를 위해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구조 유지
-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II 유형 및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지원 유도

< 국가장학금 (I+II유형)+대학 교내·외 장학금 연계기준(안) >

구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3구간 이하)	등록금 대비 100%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8구간 이하)	대학 재정 현실에 맞게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구간 이하)	등록금 대비 70%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상 (9구간 이상)	지원 제외 (긴급경제사정곤란자 등 예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7구간 이하)	등록금 대비 50% 지원		

□ (I 유형 : 23,251억 원)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은 전년 지원수준 유지하되,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하여 소득구간 경계값 조정

* ('19년) 4,613,536원 → ('20년) 4,749,174원(135,638원, 2.94% 증)

〈 '20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금액(단위 : 만원) 〉

구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자격 기준	~30%	~50%	~70%	~90%	~100%	~130%	~150%	~200%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경계값 (단위: 천원)	-	1,424	2,374	3,324	4,274	4,749	6,173	7,123	9,498

- (다자녀 : 7,423억원)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대학생 자녀에게 연간 기초~3구간은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원 지원
- (II 유형 : 4,800억 원)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노력 대응 지원 및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 교내장학금 기준을 '유지·확충'에서 최근 3년간('16~'18년) '교내 장학금 평균 지급률* 이상'으로 변경하여 대학 간 형평성 제고
 - * 등록금 수입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 대학 19.143%, 전문대 15.731%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사이버대) 및 지역인재장학금(지역 소재 캠퍼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20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 운영비(29억원) 제외

IV

세부 지원 계획

1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목적

- 저소득층·중산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을 연간 520만원을 한도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환산액이 949.8만원 이하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대학의 평생 교육 체제 지원 사업(구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8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지원 제한

- '18,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0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 제3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9.8.28.)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미신고 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 규모) 총 2조 3,251억 원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 '20년 1유형 연간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원단가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필수경비가 아닌 경비(선택경비): 학생회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제별·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관리하되, 현재 소속 학교 내에서의 수혜실적만 합산(과거 학교 수혜이력 미산입)

〈 소속 학교내에서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 한도 관리방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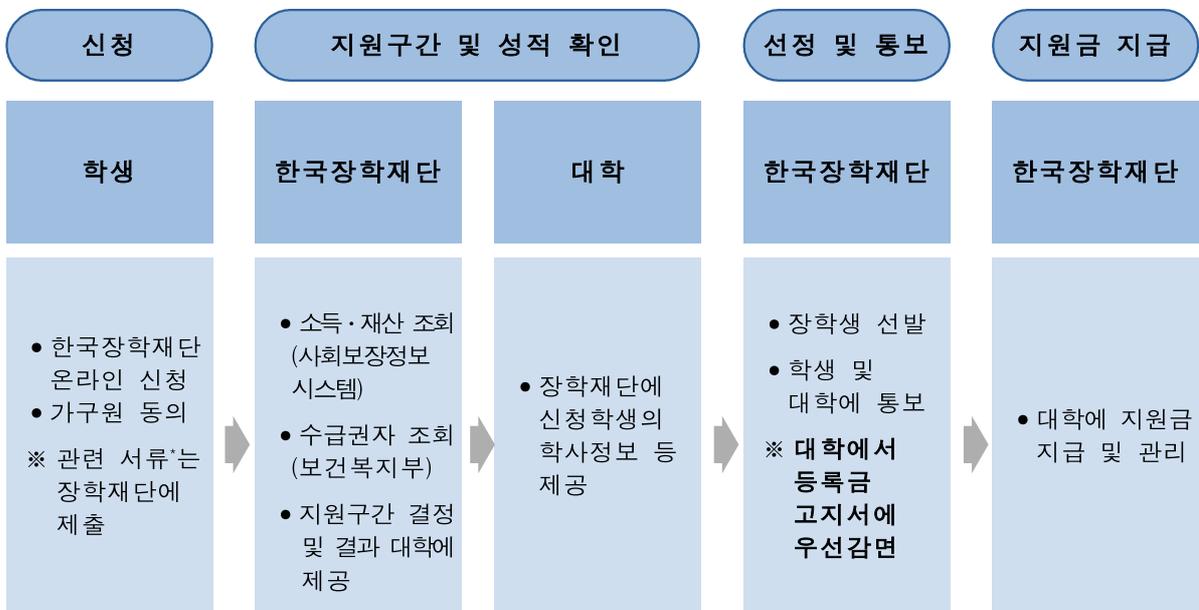
구분	현행	개선
수혜 횟수 한도	○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정규 학제	○ 개인별 총 한도 8회* (단, 재학 중인 학교 내에서는 정규 학제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해 5년제 재학생은 10회, 6년제 재학생은 12회까지 수혜 한도 부여
수혜 횟수 실적 산정	○ 학교 이동과 무관히 개인별 수혜 실적 누적	○ 개인별 수혜 실적 누적
국가장학금 외 장학금 수혜실적	○ 우수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도 수혜횟수로 합산	○ 현행과 같음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심사 후 지원 가능

※ 단,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 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 (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목적

-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대상 대학과 동일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자녀에 한함, 연령 무관)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환산액이 949.8만원 이하인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대학의 평생 교육 체제 지원 사업(구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I 유형과 동일)

구분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8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7,432억원
- (지원금액) 기초~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지원
 -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여부 확인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 관련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을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 (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3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목적

-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등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자체노력과 연계 지원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방대학 유치·양성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기본구조 〉

▪ 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3,100억원)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900억원)
▪ 지역인재장학금 (800억원)

↔
연계

대학 자체노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지원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대학의 평생 교육 체제 지원 사업(구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지원 제한

- '18,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I 대학의 '20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19년 제3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9.8.28.)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미신고 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3,100억 원

※ 자체노력 연계 지원과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간 예산의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상호 활용 가능

○ (대상대학)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자체노력 이행 대학

- (등록금)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 전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

※ 평균등록금 및 전년대비 인하 또는 동결 여부는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준용

※ 단,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장학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으로 확인된 경우 '동결(인하)'로 인정

- (장학금) 전년 대비 1인당 교내 장학금의 유지 또는 확충

※ 등록금 인하 시에는 인하규모 만큼 교내장학금 규모 감축 가능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개선 방안】

- (개선방안) 입학금 폐지분 만큼 교내장학금을 조정('22년까지)하고도 평균 지급률* 이상인 대학의 경우, 지급률과의 차액만큼 교내장학금 조정 인정

* 등록금 수입 총액 대비 교내장학금 지급률 : 대학 19.143%, 전문대 15.731%

※ 평균 지급률 이하인 대학은 '1인당 교내장학금 유지 또는 확충' 기준 유지

- (교내장학금 감소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

① 교내장학금 조정은 5년간('20~'24년) 분할 실시

②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예산 배정 시 교내장학금 지급률 유지 수준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10%)를 부여*

* 배분 산식 : 저소득층 가중인원 × 장학금 지급률 × (등록금 인하율 + 장학금 증가율) × 연속참여율 × 교내장학금 지급 인센티브

※ II유형 사업 내 지역인재 장학금 등 집행잔액 발생 시 교내장학금 조정대학에 II유형 추가 배정하여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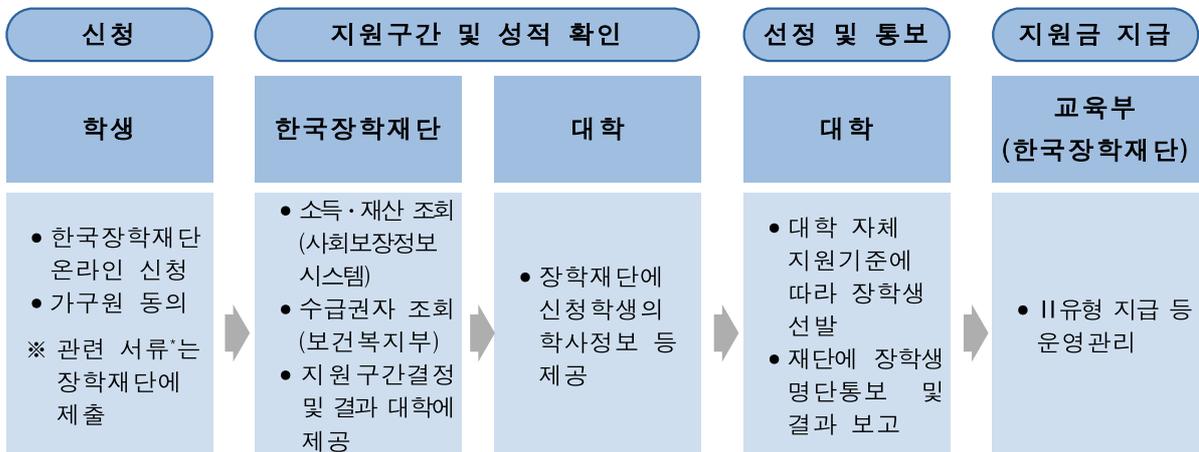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대학별 지급액) 대학별 배분산식에 따라 예산 내 총액 배분
 - ※ 본·분교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신청 시 각각 신청
 - 대학별 노력분은 재학생 및 저소득층 규모, 교내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률, 연속참여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 국가장학금 II유형 노력분 배분방식 >

▶ 대학별 인정규모 배분산식 = $\left(\frac{\text{대학별 노력분}}{\text{참여대학 노력분 합계}} \right) \times 3,100\text{억 원(노력분)}$

□ 지원기준 및 선발절차

- (지원기준) 대학 자체지원기준 수립하여 I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 ※ 대학 자체지원기준은 내부결재를 통해 문서화하여 근거 유지 필수
 - 자체지원기준은 교내·외장학금을 포함하여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기초→차상위→1구간…) 될 수 있도록 설계 권장
 - 다만,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10구간도 지원 가능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대학)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⑤ (대학) 학생 선발·지원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결과 통보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을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 지급
 - II 유형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 (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사후관리

- 자체노력계획에 대한 실적확인 결과 계획대비 부족 시 반환금 발생 가능
 - ※ 단, 참여조건(자체노력규모 산식 결과 값이 0에 해당하는 교내장학금 또는 평균 지급률에 해당하는 교내장학금)을 초과이행한 대학은 반환 불요
 - 실적이 참여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연도 지원예산을 반환하고 실적확인 연도에도 지원예산 재산정에 따른 반환금 발생 가능
 - ※ 단, 미충족분에 대한 실적을 확인한 당해 연도에 추가 이행 가능

3-2 II 유형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900억 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900억 원
- (대상학생) 입학금 감축계획 제출대학 중 정보공시 확인 결과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대학별 교부액) 입학금 규모의 20%(전문대 및 사이버대는 33%)를 교부
 - ※ 국공립대는 '18년 입학금 전액 폐지 합의사항에 따라 미지원
 - ※ 대학·학생·교육부가 합의한 입학금 감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사이버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배정 산식 〉

- ▶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 규모('17년 평균 입학금 × '20년 지원 대상인원) × 20%(전문대는 33%)
- ▶ (사이버대학) 입학금 규모('19년 평균 입학금 × '20년 지원 대상인원) × 33%

- (신청 및 지급방식) 대학에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일괄 신청 및 '20년 입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 상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적용자는 각 대학에서 자체 지급

□ 지원기준 및 행정사항

- (지원기준)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의 '20년 입학생에게 '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장학금 지원
 - ※ 사이버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장학금 지원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입학생에 한함
- 입학금 감축 대응분 지원 시 성적 및 소득기준 미적용
- 등록금 내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중 입학금 항목으로 한하여 지원
- 예산지원 후 공시변경에 따라 입학금 감축계획 미이행 시 지원예산 반환 발생 가능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3-3

II 유형 - 지역인재장학금 (800억 원)

□ 지원대상

- (대상 대학) 아래 각 호의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 본·분교 또는 본교·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능
 -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0학년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하며, 캠퍼스의 경우 본교가 '20년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대학일 경우 지역인재 참여 불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한국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년 신입생으로 비수도권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자
 - (성적우수분야) 일반대는 수능 혹은 내신(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는 수능 혹은 내신(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충족자
 - (특성화분야)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를 자체 선발
- (사업 예산) 800억 원
- (지원범위 및 기간) 기초 ~ 8구간 학생에게 매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기간 차등 적용

□ 사업신청

- (신청방법)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서 및 인재양성 계획서 제출
 - 인재양성계획서에 '입학성적 우수인재'와 '특성화 인재'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원계획을 포함
 - 특성화 인재 분야는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
- (예산신청) 입학정원의 5%범위 내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
 - ※ 신청 가능인원의 성적우수 50%이상, 특성화 인재 50%이하로 요구

【 대학별 신청금액 = 성적우수 신청액 + 특성화 신청액 】

① 성적우수 신청액: 성적우수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성적우수 신청한도) 2019년 3등급(전문대4등급) 성적충족 학생 수로 입학정원의 5% 범위 내. 단, 성적기준 충족 학생이 입학정원의 5% 초과하는 대학은 예산신청 시 성적 우수 재배정 "Y"로 표시한 대학에 한하여 재배정 가능

② 특성화 신청액: 특성화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특성화 신청한도) 총 예산신청한도의 50% 범위 내

- (신청 요건확인) 인재양성계획 수립, 신청액 적정성 등 신청요건 적격여부 확인
- (예산배정) 예산총액에서 대학이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
- (협약체결) 예산집행, 장학생 선발 계획,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 학생 신청

- (선발 공고) 대학별로 지역인재 장학생 선발요건 사전 공고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미완료자는 지역인재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필요 증빙서류 제출) 지역 출신 또는 재능인재 등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은 대학에 제출

□ 장학생 선발 및 관리

- (선발기준)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과·분야의 인재선발 권장
 - 국정과제 추진으로 기초~차상위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우선선발
- (지원범위 및 기간) 기초 ~ 8구간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 5구간은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 의·약학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은 10학기(5년),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계속지원 가능
 - 6구간 ~ 8구간은 1년간(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외 기숙사, 학업장려비는 교내장학금을 활용 지원 권고
 - 대학은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시 제출한 지원계획 준수
- (계속지원) 직전학기 성적기준 B학점 이상, 8구간 이하
 - 대학별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유지
 - 전 학기 장학생(5구간 이하)의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지원
 - ※ 직전학기 성적기준(B학점) 2회 미 충족 시에는 장학생 영구 탈락
 - ※ 전 학기 장학생이어도 C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생 영구 탈락
 - ※ 본 기준은 전학기 지원으로 확대된 '18년 5구간 이하 선발자부터 적용
 - 1년 장학생(6~8구간)은 성적심사 1회 탈락 시 영구 탈락

□ 집행점검 및 관리

- (실적점검) 예산집행 실적 및 자체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오선발된 경우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환수
 - 집행률 저조 대학은 미집행률에 따라 차년도 신청한도 조정 가능
 - 장학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사업관리) 장학재단에서 매학기 선발결과 현황 및 선발절차 진행, 집행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

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 목적

- '14. 4. 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대학 :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대상대학과 동일
- 지원 대상 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 대학의 입학생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15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 지원
 - ※ 휴학 및 자퇴 등으로 지원기간 내에 수혜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학 학기로부터 최대 2개 학기 지원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 신청 : 학생 본인 또는 가족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과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기 신청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지원 절차 : ① (학생)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② (재단) 지원대상자 검증(세월호피해 추모지원단) → ③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 ④ (재단)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⑤ (대학)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지원구간.수혜 횟수 등 심사요건 미적용
-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

5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 목적

- 포항 재난 피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대학 :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대상대학과 동일
- 지원 대상 학생
 - '17년 2학기 재학생 및 '18년 입학 학생 중 행정안전부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NDMS)상 재난지원금대상자* 가정**의 학부 재학생
 - * NDMS 4차 명부까지 확대 지원하며, 포항시의 재난지원금 집행 확인 가정만 지원
 - ** 피해자가 학생 본인(이혼 및 사별), 학생 본인 및 부모(미혼 시) 또는 학생 본인 및 배우자(기혼 시)인 경우에 한정

○ 지원 제한 대상

- 과거학기 중복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이연복학자
※ 중복지원 해소 또는 휴학 시 지원받은 장학금 반환 시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등록금(필수 경비 내) 전액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 잔여 등록금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항장학금 수혜 횟수(2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지원기간) 1년간(2학기 범위 내) 지원

- 휴학 또는 자퇴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복학 학기 또는 신·편입학기에 지원

< 피해자 명부 및 입학연도별 지원대상 학기 >

구분		지원 기준
1~2차 피해자 명부 (17년말 본진)	17년 이전 입학한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7.2학기~'18.1학기 2개 학기 지원 - '17.2학기~'18.1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7.2학기~'18.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기 재학 학기에 수혜 횟수 내 지원 가능
	18년 입학한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8.1학기~'18.2학기 2개 학기 지원 - '18.1~2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8.1~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기 재학 학기에 수혜 횟수 내 지원 가능
3차 피해자 명부	18년 입학한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8.2학기~'19.1학기 2개 학기 지원 - '18.2학기~'19.1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9년 신·편입, 재입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피해자 추가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20.1학기~'20.2학기 2개 학기 지원 - '20.1학기~'20.2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기 졸업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도 마련 예정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지원 신청 : 학생 직접 신청
- 지원 절차 : ①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 ② (재단) 지원대상자 심사(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③ (재단)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④ (대학) 개별지급(등록금 환급)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지원구간 등 심사요건 미적용
-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I)도 지원 허용
-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

6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 **목적**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주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 하에 학비 지원 필요
 -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따라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나,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일관된 기준 없이 사안*에 따라 달리 지원
- * 세월호 사건, 인천 소래포구 화재, 포항 지진(3개 재난만 등록금 지원)

< 국가재난 발생 시 교육비 지원 현황 >

구분	고등학교 학비	대학 등록금
지원 근거	• 「재난안전법」	• 없음
지원 기준	• (대상) 생계 수단 50% 이상 피해, 주택 유실·전파·반파 등 • (내용) 고등학생 자녀의 6개월 간 수업료(약 60~70만원)	• 없음(사안에 따라 달리 지원) ※ 세월호, 포항 : 1년간 등록금 전액 소래포구 : 대학 자율지원 ※ 포항 지진 시 '소파' 피해자까지 지원하여 피해 대비 지원이 크다는 지적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 (지원 대학)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모든 대학
- (지원 학생) 재난 피해 가구원으로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피해 규모) 주택 전파 또는 반파
 - ※ 피해지역 지자체에서 개인별 피해 규모 확인 및 피해자 명부 작성
 - (가구 소득) 소 지원구간 지원하나, 소득에 따라 지원액 차등
 - (제한 대상)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이연복학자*
 - * 휴학학기 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이연자 해지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재난 발생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1년(2학기)간 지원
 - ※ 지원 기간동안 휴학 및 자퇴·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학생의 지원은 유예하지 않음
- (지원 금액) 피해 가구의 소득·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소득·피해 규모별 지원 금액 >

피해 규모	지원 6구간 이하	지원 7·8구간	지원 9·10구간 / 지원구간 미산정
• 주택 유실·전파	• 등록금 100%	• 등록금 50%	• 등록금 50%
• 주택 반파	• 등록금 100%	• 등록금 50%	• 등록금 25%

※ 재난 피해는 사전에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당해연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중복지원 방지)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 방식

- (피해자 선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자체가 피해자 및 학생 명부(피해 수준 포함)를 교육부 및 재단에 제공
- (학생 선발)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피해학생 명부 송부,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 선발 시 반영
- (예산)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 활용
 - ※ 필요한 경우 타 국가장학금 불용예산을 II 유형으로 전용하여 지원

V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체계



* 유형 I, II, 다자녀 국가장학금 공통 유형 II만 해당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대학 의견 수렴 등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
 -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대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제공, I 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통보, 대학의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및 평가 등
- (대학) 지원대상자 선정(II유형), 자체노력 시행, 등록금 고지서 감면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I 유형, II 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하고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과 타 장학금 명확히 구분

※ 대학은 II 유형 학기별 지원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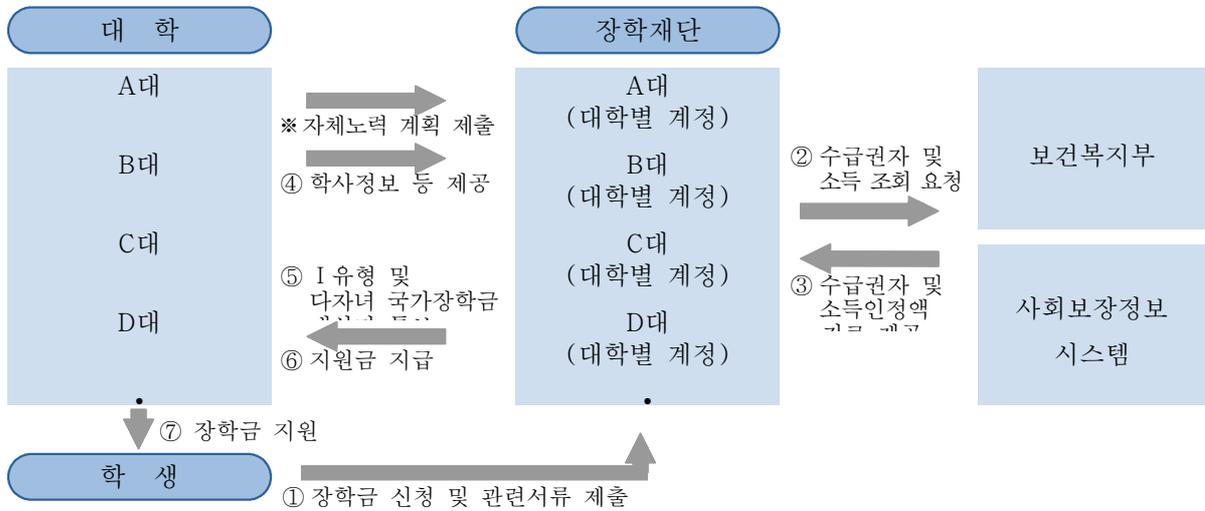
-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시스템 등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급하고, II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해당 학기 교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에게 50% 이상 집행 권고

○ 업무 흐름도('20.1학기 기준)



□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관련서류*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제출
 -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 (한국장학재단)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학사정보 등을 제공 받아 신청학생의 지원구간 및 I 유형 지원 대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통보
-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지원 대상자 명단과 II 유형 신청자에 대한 지원구간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실시



○ 국가장학금사업 운영 절차



VI 사업 관리

□ 대학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장학사정관계’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및 구축

-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역할 수행(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적변동자 관리 등)
- 국가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상반기 '20.8월, 하반기 '21.1월) 의무제출
(미제출 대학은 차기 학기 지급제한 등 패널티 부여 가능)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 오선발, 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방안 등 국가장학금 집행 관리 역할 수행
 - 사업운영 관련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재단에서 수행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곤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회부 가능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국가 및 행정 기관으로부터 민·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 등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소득구간 변경, 학생 성적포기에 따른 성적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학기까지 미반환시 중복지원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 학생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반환대상자는 대학 협조공문을 통해 제한하며, 사유 해소시 지원 가능
- 대학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금 관리
- 각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대학의 이행실적 점검 추진
- 국가장학금 부당 사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 오선발,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결산 보고

□ 교육부

- 학사운영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VII

추진 일정

□ '20.1학기 추진 일정

내 용		'19-1학기	20-1학기	비고
지원계획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	-	-
재학생 신청 (1차 신청)	국가장학금 재학생 신청 접수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학적)	'18. 11. 20.(화) ~12. 17.(월) (총 28일)	'19. 11. 19.(화) ~12. 17.(화) (총29일)	- '19.11.8.(금) '19. 2학기 지원 심사 종료 - '19.11.14.(목) '19. 2학기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18. 11. 20.(화) ~12. 20.(목)	'19. 11. 19.(화) ~12. 19.(목)	-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소득재산조사 개시	'18. 12. 3.(월)~	'19. 12. 2.(월)~	-
	학생별 지원구간 확정 및 대학 통보	'19. 1. 22.(화)~	'20. 1. 21.(화)~	-
	고객상담 및 이의처리	'19. 1월~	'20. 1월~	-
1차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19. 1. 22.(화)~	'20. 1. 21.(화)~	-
	(재단) 유형·다자녀 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우선감면/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실시	'19. 1. 22.(화)~	'20. 1. 21.(화)~	-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19. 2월~	'20. 2월~	-
	(재단) 1차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19. 3월~	'20. 3월~	-
신입생 및 복학생 신청 (2차 신청)	국가장학금 신입생 신청 접수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1차 미신청 재학생)	'19. 1. 29.(화) ~3. 6.(수) (총 37일)	'20. 2. 3.(월) ~3. 10.(화) (총37일)	'20. 2. 5.(수)~ 정시 모집 신입생 등록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19. 1. 29.(화) ~3. 8.(금)	'20. 2. 3.(월) ~3. 12.(목)	-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학생별 지원구간 확정 및 대학 통보	'19. 3. 19.(화)~	'20. 3. 17.(화)~	-
	고객상담 및 이의처리	'19. 3월~	'20. 3월~	-
2차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19. 3. 19.(화)~	'20. 3. 17.(화)~	-
	(재단) 유형·다자녀 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재학생)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19. 4. 1.(월)~	'20. 4. 14.(화)~	-
장학금 지급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재단) 신입생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19. 4월~	'20. 4월~	-

※ 교육부 및 부서 간 협의결과에 따라 재단 내부 일정 변경 가능

붙임

'20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		36,051억 원			35,503억 원			*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 감액(△548)
		(I 유형) 27,389억원	(II 유형) 4,800억원	(다자녀) 3,832억원	(I 유형) 23,251억원	(II 유형) 4,800억원	(다자녀) 7,423억원	
I 유 형	지원 단가	▶ 기초~3구간 520만원, 4구간 390, 5~6구간 368, 7구간 120, 8구간 67.5			▶ 전년 동일			
	성적 기준	▶ 80점(B학점) - 기초·차상위 C학점(70~79점) 이상 - 1~3구간 C학점 경고제 - 장애 대학생, 성적 심사 폐지			▶ 전년 동일			
	지원 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 - 초과학기 제한 폐지			▶ 수혜횟수 기준 완화 - 총 학업기간 중 8회 한도 내에서 수혜횟수 실적은 현재 소속학교 내 수혜횟수만 관리			▶ 수혜횟수 기준 완화
II 유 형	대학 연계 지원	▶ (참여조건) 평균 등록금 인하·동결 및 1인당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 교내장학금 참여조건 완화 - 입학금 폐지분 만큼 교내장학금 조정 후 평균 지급률* 인상인 경우, 교내 장학금 조정 인정 * 대학 19.143%, 전문대 15.731%			
	입학금	▶ (신청) 대학 대표 신청 ▶ (지급) 입학금 고지서 선감면			▶ 사이버대학을 입학금 감축 지원 대상 대학에 포함('19년 입학금의 33%)			▶ 사이버대학 사업 참여
	지역 인재	▶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특별법에 의한 6개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 대상대학 확대 - 본·분교 또는 본교·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능			▶ 지역 소재 캠퍼스 참여 허용
다 자 녀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 - 기초~8구간(연령 무관) - 성적 요건 I유형과 동일			▶ 전년 동일			
	지원 단가	▶ 기초~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			▶ 전년 동일			

▶ 운영비 29억원 별도